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LPG사용시설 검사업무 착안사항(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)

Ι

배 경

- 액법 시행규칙 개정*으로,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건조물과 소 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신설·강화됨
 - *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2)라), <개정 '20.3.18., 시행 '20.6.19. >
- 이에 따라, 개정된 법령의 적용기준, 검사방법 등 LPG특정사용 시설 검사업무 착안사항을 안내하고자 함

Π

개정내용

ㅇ 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<첨부 1>

구분	개정 전				개정 후	
적용대상 설비	저장능력 250kg이상 소형저장탱크			모든	- 소형저장팅	탱크
적용대상 시설	목조 또는 가연성건조물			다중이용시설, 가연성건조물(외장재 포함)		
거리 측정기준	소형저장탱크			소형	저장탱크 바 ?	깥 면
소형저장탱크-가연성건조물 간 건축물개구부에 대한 거리 유지		소형저장탱크- 간 건축물 개				
이격거리	1 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	1,000kg 이상 2,000kg 미만 3m	2,000kg 이상 3.5m	1,000kg 미만 1m	1,000kg 이상 2,000kg 미만 6m	2,000kg 이상 7m

착안사항

1. "다중이용시설" 이격거리 측정방법

ㅇ 다중이용시설 자체와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 사이의 직선거리 측정



- (1) 다중이용시설 단독건물인 경우
- (2) 건축물의 일부가 다중이용시설인 경우
- ※ 이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가스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는 장소 주위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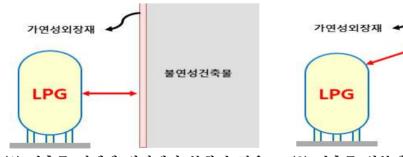
2. "가연성 건조물" 확인방법

가. "가연성 건조물" 정의

- 1) 가연성 : 「건축법」 상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성능 이하를 말함
- 2) 건조물 : 표준국어대사전에서 "지어 만든 물건/지어 세운 가옥, 창고, 건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"로 정의하고 있음

나. "가연성 건조물" 적용범위

- 소형저장탱크를 마주하는 건조물의 벽 재료(또는 외장재)가 가연성인 경우
 - ※ 예시 :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건물. 건축물 외부에 목조 등 가연성 소재를 덧대어 설치한 경우 덧대어진 부분(외장재)를 가연성 건조물로 적용



- (1) 건축물 전체에 외장재가 부착된 경우 (2) 건축물 일부에 외장재가 부착된 경우

불연성건축물

다. "가연성 건조물" 확인방법

- 1) "가연성 건조물"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판단 가능한 경우, 별도의 징구서류 없이 검사현장에서 판단하여 기준 적용
 - ※ 건축물 재료가 콘크리트 벽돌, 기와, 철강, 시멘트 등 가연성이 이닌 것이 명확한 경우
- 2) 외장재 설치 등으로 "가연성 건조물"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, 건축물 대장, 외장재 시험성적서, 단열재 성적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
- 2-1) (건축물 대장) 관련 법*에 따라,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"건축물 대장"을 징구하여 확인
 - *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)제5항 및 제6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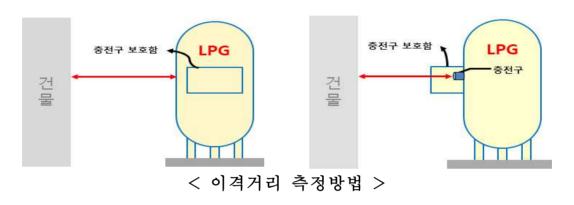
<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>

불연성 건축물 설치일	건축물 종류
'19. 11. 7. 이후 설치	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
'15. 9. 22 이후 ~ '19. 11. 7.	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이전 설치	ㅇ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

- ⇒ 건축물 대장을 징구하여 "건축물 설치일" 및 "건축물 종류"를 확인하여 위 표에 해당할 경우,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판단
- 2-2) (성적서) 외장재, 단열재(필로티 구조일 경우)의 불연·준불연· 난연재료 시험성적서*를 징구하여 "가연성 건조물" 여부 확인
 - *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」 제6조(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시험성적서)

3. "소형저장탱크 바깥 면" 의 기준

- KGS AC111 1.4.2.1에 따른 압력용기 등의 기하학적 범위 적용
 - 용접으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용접이음매까지
 - 플랜지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플랜지이음면까지
 - 나사결합으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나사결합부까지
 - 그 밖의 방법으로 압력용기와 배관을 연결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음부까지



4. 직선거리 1배를 적용하는 기준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 연성 건조물의 경우,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 유지 가능 (2배 미적용)
 - 1)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
 - ※ "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"이란 사람이 작업 등을 목적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(산업부 해석)
 - → 나무기둥과 천막으로 된 구조물의 경우에도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시 근무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로 판단 가능
 - 2)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※ 설치기준: FU432 2.9.3(살수장치 설치)
 - 3)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
 - 4)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(추후 고시 예정)

3-1) 방화벽 설치방법 ※ 4page 직선거리 1배 적용기준 관련

가. 관련규정 : 「건축물의 피난・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1조

나. 정의 :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(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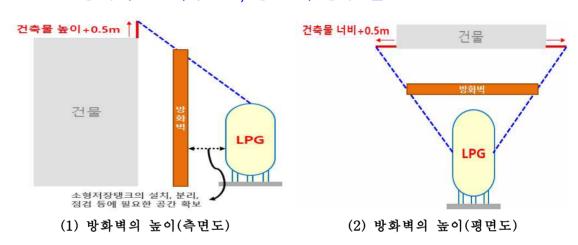
다. 설치자격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 등

라. 재료(내화구조) : 벽, 비내력벽, 기타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 ※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3조(내화구조)

구 분	종 류		
増	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•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등		
비내력벽 (상부로부터 하중을 받지 않는 벽)	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등 무근콘크리트·콘크리트블록조·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등 		
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	*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성적서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하고 명시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※ 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와 내화구조는 다른 개념임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

마. 방화벽의 구조

-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
 - ※ 구조기술사가 발행한 구조계산서에 따른 두께, 깊이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→ 구조계산서 징구 필요
- 방화벽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 외벽면과 지붕면으로부터 +0.5m
 - ※ 방화벽이 아래 그림과 같이 소형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방화벽 상단 양쪽 끝을 지나는 직선이 건축물 외벽면과 지붕면이 +0.5m 지점과 만나지 않도록 설치
 - → 방화벽 도면(측면도, 평면도) 징구 필요



- 출입문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.5m 이하,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
 - 갑종 방화문 : 비차열(比遮熱) 1시간 이상, 차열(遮熱) 30분 이상(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)의 성능을 확보
 - ※「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」에서 시험기준 및 시험 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) 등을 규정하고 있음



< 방화문 시험성적서 및 설치 예시 >

5. 적용시점

- 가. 관련기준 : 액법 시행규칙 부칙 <제367호, 2020. 3. 18.> 제8조
 - 2020. 6. 19일 이후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개정된 기준 적용
 - '20. 6. 18일 이전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렁 제367호, 2020. 3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제1호나목1)러), 별표 6 제1호나목1)아), 별표 13 제5호사목, 별표 20 제2호가목1)라) 및 같은 목 8)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
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)라) 및 같은 목 8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나. 착안사항

-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(검사 신청일×)
 - '20. 6. 19일 이후 완성검사가 신청되더라도, '20. 6. 18일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, 종전의 규정에 따름
 - 설치확인서 징구(첨부 2), 도면 등에 표시된 완공일 등으로 확인 (시공자 서명 必)
 - → 설치확인서 또는 완공일이 표시된 도면 징구(시공자 서명 必)

6. 거리 미 유지시 추가 징구서류

- 가. 2020. 6. 18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(개정 이전 기준 적용)
 - 설치확인서 또는 완공일이 표시된 도면 징구(시공자 서명 必)
- 나. 2020. 6. 19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(개정 이후 기준 적용)
 - 1) 살수장치 설치 시설
 - 가) 시설배치도(축적:1/50~1/600) :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
 - 나) 살수장치 용량 계산서

2) 방화벽 설치시설

- 가) 시설배치도(축적:1/50~1/600) :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
- 나) 방화벽 도면
 - 평면도(축적:1/50~1/600): 방화벽의 너비, 건축물 외벽면의 + 0.5m지점과 탱크와의 연장선 등이 표시된 것
 - 측면도(축적:1/50~1/600): 방화벽의 높이, 건축물 지붕면의 + 0.5m지점과 탱크와의 연장선 등이 표시된 것
- 다) 내화구조 인정서, 방화문 시험성적서(해당될 경우)
- 라) 구조계산서(기초)
- 마) 주요 공정 사진(기초, 방화벽)
- 바) 방화벽 설치확인서
 - ※ 마) 및 바)는 방화벽 설치방법 중 완성검사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공정(기초 설치, 철근배근 등)을 확인하기 위함

3) 불연성 건조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

	구분		
불연성 건조물 설치일	건축물 종류	추가 징구서류	
'19. 11. 7. 이후 설치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제61조(건축물의 마감 재료)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<시행: 2019.11.7., 대통령령 제30030호> ※ 본 착안사항 3page 표 참고	가. 시설배치도(축적 : 1/50~1/600) : 다중이 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 나. 건축물 대장	
	ㅇ그 외 건축물	가. 시설배치도(축적: 1/50~1/600): 다중이 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 나. 건축물 대장 다. 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시험성적서 (건축물 벽, 외장재 및 단열재*) * 필로티 구조일 경우 징구	
'15. 9. 22 이후 ~ '19. 11. 6. 이전 설치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제61조(건축물의 마감 재료)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<시행: 2015.9.22., 대통령령 제26542호> ※ 본 착안사항 3page 표 참고	가. 시설배치도(축적 : 1/50~1/600) : 다중이 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 나. 건축물 대장	
	○그 외 건축물	가. 시설배치도(축적: 1/50~1/600): 다중이 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 나. 건축물 대장 다. 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시험성적서 (건축물 벽, 외장재 및 단열재*) * 필로티 구조일 경우 징구	
'15. 9. 21. 이전 설치 ○모든 건축물		가. 시설배치도(축적: 1/50~1/600): 다중이 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 바깥 면과의 거리가 표시된 것 나. 건축물 대장 다. 불연·준불연·난연재료 시험성적서 (건축물 벽, 외장재 및 단열재*) * 필로티 구조일 경우 징구	

IV

행정사항

1. 지역본부/지사

-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담당검사원 교육 실시
-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LPG 사용시설 검사시 개정된 규정 적용 철저
-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시공자 및 공급자 관련사항 안내

2. 본사

- (기준처) KGS Code에 주요내용 반영(3분기)
- (검사지원처)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세부 처리방법 등 반영(3분기)

- 첨부 1.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(신구대비표) 1부.
 - 2. 소형저장탱크 설치확인서(예시) 1부.
 - 3. 가스사용시설 방화벽 설치확인서 1부. 끝.

첨부 1

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(신구대비표)

현 행	개 정
별표 20	별표 20
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	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
2.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. 시설기준 1)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,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)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나) 또는 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) 또는 다)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한다. 가) ~ 다) (생략) <신 설>	2.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. 시설기준 1)

- 2) ~ 7) (생략)
- 8) 목조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 장탱크[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경우만 을 말한다. 이하 8)에서 같다]와의 사이 에 1)가)의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장 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 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1)다)와 같은 방 법으로 방호벽을 설치할 것

- 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 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 지해야 한다.
- (1)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
- (2)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
- (3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
- 2) ~ 7) (현행과 같음)
- 8) <삭 제>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7호, 2020. 3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제1호나목1)러), 별표 6 제1 호나목1)아), 별표 13 제5호사목, 별표 20 제2호가목1)라) 및 같은 목 8)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
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 제2호가목1)라) 및 같은 목 8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첨부 2 소형저장탱크 설치확인서(예시)

소형저장탱크 설치확인서

○ 시 설 명 :

ㅇ 소 재 지 :

상기인은 2020년 ○월 ○일 소형저장탱크(제조번호:)를 위 시설에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 속:

(인) 시공자 :

한국가스안전공사 00지역본부·지사 귀하

점부 3 가스사용시설 방화벽 설치확인서(예시)

가스사용시설 방화벽 설치확인서

ㅇ 시설명 :

○ 소재지 :

○ 시공일자 : 년 월 일

상기 LPG사용시설에 대하여 「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규칙」 별표 20 제2호가목1)라)(2)에 따라 「건축물의 피 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 속:

시공자 : (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00지역본부·지사 귀하